

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8월 2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8월 2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3390호, 1991. 6. 19) 제 41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.

주요 골자

○ 공인의 종류 및 규격 (안 제2조 및 제3조).

○ 공인의 교부 및 등록, 재교부, 폐기 (안 제5조 및 제6조).

○ 공인의 관수방법 및 날인 (안 제10조 및 제11조)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충청북도 교육감소속 기관 공인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관인 규칙에 의하여 시행해 왔으나, 사무관리규정 제41조(공인)의 규정에 의하면 "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"로 되어 있음.

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, 등록,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할 것임.

6. 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